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8일,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8. 26.)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9. 3.)

상정·축조심사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024.

11. 21.)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

11. 26.)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박충권의원)

코로나19 이후 키오스크 등의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UI로 인하여 일상 생활 속의 정보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의 우선 구매 제도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두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선 구매 대상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의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지능정보제품에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정보통신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하는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정보통신을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코로나19 이후 무인정보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장애인·고령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정보격차가 커지는 상황인 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유·무선 정보통신 접근성 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규정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우선구매와 품질인증은 적용 대상 및 운영방식 등에 있어 상이한 제도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개정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인정보단말기를 품질인증의 적용 대상에 추가한 후 국가기관등이 품질인증을 받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야 하므로 관련 규정의 정비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현)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개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